[공고 제2026-B-173]

「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」
AI어장 현장실증(시설, 제품 고도화) 지원 공고

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」의 일환으로 수산양식 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"AI어장 현장실증(시설, 제품 고도화) 지원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일

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
1 사업목적

○ 기업보유 기술·제품의 수산양식분야 적용, 개량을 통한 도내 수산양식의 기술도입, 디지털 전환 촉진

○ 기술·제품의 수산양식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수산양식 저변 확대, 기업 역량강화

2 지원사업 개요 및 내용

□ 지원사업 개요

○ 사 업 명 : AI어장 현장실증(시설, 제품 고도화) 지원

○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’ 26. 11. ※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(’ 26. 12. 예정)

○ 사업규모 : 총 330,000천원(5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66,000천원)

○ 사업내용 : 현장 중심의 실증을 통한 시설·제품 고도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수요 기반 문제해결

▢ 지원 내용

○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’ 26. 11. ※ 사업비 정산기간은 별도(’ 26. 12. 예정)

○ 지원대상 : 해양, 수산양식 분야에 적용가능한 제어·기기, 제품 제조, 서비스(SW, 응용서비스) 분야 ICT기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의 기업, 법인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

※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(사업자등록 必)

※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.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 해당하며, 주관기관 참여율 51%(구성, 사업비 등) 이상 의무

※ 고도화 실증 지원 과제임에 따라 기존 개발 시설,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며, 과제 지정 대상지에 시설·제품 실증이 가능해야함

[사업참여 제한 대상]

1) 수행기관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이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
2) 수행기관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이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3) 사업자 또는 대표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4)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관리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5)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
6)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을 체납한 경우

*** 관련근거 :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5조(지원과제 참여제한)**

○ 지원규모 : 총 330,000천원(5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66,000천원)

- 1개사당 1과제만 지원금 지원

※ 본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기 지원받은(또는 수행중인) 동일·유사과제 지원 불가

※ 본 지원사업 내 중복 제안 불가. 중복 제안 시 제안과제 모두 불인정

- 총사업비 : 과제당 지원금(75%) + 기업부담금*(25%)

* 기업부담금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(‘현금’ 또는 ‘현금(10% 이상 필수)+현물’ 부담)

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(필요시 별도 종합심의위원회 구성)

- 지원금 지급 :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분할지급

1차	2차
협약체결 ·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% 지급	중간평가 결과(계속)에 따라 지원금 40% 지급

※ 중간 · 결과평가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

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

· 과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 必

제출시기	보험금액	보험기간
1차 지원금 신청 시	지원금의 100%	협약기간 + 60일

❍ 지원분야 : 실증지 수요 맞춤형 시설, 제품, 서비스 고도화 실증지원

- 지역별 수요 현안 중 1개 현안을 선택하여 과제 제안

구분	대상 지역	대상 품종	관련분야	현안 주요 내용
현안 1	고흥군	김	조사 · 탐지 · 분석 계측 · 제어 소재 · 시설 고도화	김 황백화를 유발하는 영양염 등 원인물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소형 센서 · 장비 기반의 측정기술 부족
현안 2	신안군	김	계측 · 제어	조류 및 해양환경 변화와 영양염 부족 등으로 김 양식어장의 적지선정과 시설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, 조류 · 해양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예측 및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
현안 3	완도군	전복	예측 · 대응	기후변화에 따른 고 · 저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완도군 내 양식장 관측 사각지대 해소 및 보급형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망 부족
현안 4	진도군	전복	조사 · 탐지 · 분석 예측 · 대응	고수온 등 어업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고내구성 어장환경 관측기기 및 유지관리 체계 부족
현안 5	해남군	김	조사 · 탐지 · 분석 예측 · 대응	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· 해황 변화 등 환경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김 · 전복 양식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, 과학적 데이터 및 AI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

※ 대상 지역별 1개 과제만 선정하며, 지역별 현안 세부 내용은 [붙임 3] 파일 내용 참고

※ 제안과제는 해당 지역의 수요 현안 해결을 목표로 **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**하여야 함.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**해결방향 및 서비스 형태 등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**

❍ 지원내용

- 기업개발 시설 · 제품, SW 및 응용 서비스의 현장 적용, 운영 지원

· 사업참여 5개 지자체의 지정된 김, 전복 실증구역(테스트베드 구축지) 내 실증 시행

※ 지역별 주산지 : 김 - 고흥, 신안, 해남 / 전복 - 완도, 진도

※ 실증 구역은 협약 시 협의하여 확정 예정

· 당 사업에서 기구축된 해양환경 데이터 등 활용 지원

※ 상기 데이터는 공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- (기술컨설팅 참여)제안된 과제의 연계 확장 분야, 또는 별도 분야에 대한 기술컨설팅 참여 필수 * 컨설팅 비용은 진흥원 부담

<지원사업 연계 - 기술 컨설팅 지원>

- 지원목적 : 기업 보유 기술, 제품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지원을 통해 수산양식-ICT 기술기업 발굴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. 12.
- 지원내용
  - ▸ 해양수산 분야 제품·기술 보유 기업 대상으로 시장 진출 전략 수립, 기술·제품 고도화, 사업화 모델 개선 등 전문 자문
  - ▸ 수산양식 연구개발,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ICT기업(업종전환, 신규 창업기업 포함) 대상으로 AI·빅데이터·마케팅·비즈니스 모델 등 다각적 분야 맞춤형 컨설팅
- 지원방법 : 도내 해양수산 및 ICT컨설팅 관련 전문기관 선정하여 추진

○ 공통 성과목표

연번	성과물	목표	비고
1	실증 결과보고서	1건	• 실증과정에서 수집·산출되는 데이터 등 포함
2	실증결과물 검증보고서	1건	• 외부 기관 검증 추진
3	실증결과물 시험인증서	1건	• 공인시험인증 획득 의무
4	지적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	2건	• 특허, 저작권, 디자인, 상표, 실용신안 등
5	신규인력 고용	1명 이상	• 협약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,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상 고용유지 • ’26. 1.이후 채용인력은 신규인력으로 간주 가능(타 지원사업 신규인력 미등록자에 한함) •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제출
6	성과홍보	1건 이상	• 제안한 실증과제 관련 온라인 보도자료, 지면기사 등
7	매출 실적자료	1건	• 기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재무제표 등) ※ 매출 증가율 10% 달성(2026년 대비)

○ 기타사항

- 실증 결과물의 현장수용성 확보 및 성과 확대를 위해 진흥원 운영 행사(만족도 조사 포함) 및 성과물 시연 의무 참여
-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출 실적자료 제출
- 신뢰성 확보(시험, 인증, 특허 등) 비용은 협의를 통해 지원금 활용 가능

3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

▢ 추진절차

구분	주요내용
공고 및 접수	• 공고 및 접수기간 : 공고일 ~ ’ 26. 7. 16. •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, 우편 또는 방문 접수
▼	
과제 적격여부 판정	• 제출 분야 적합 여부, 지원대상 여부, 사업 중복 수급 확인 등
▼	
선정평가(서류+발표)	• 서류평가 : 사업내용, 지원자격, 제출서류, 재무건전성 등 • 발표평가 : 추진계획 타당성, 기술성, 사업성 등 수행능력 평가
▼	
협약체결	• 평가의견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• 과제 승인 및 협약
▼	
착수보고 및 지원금 지급	• 착수보고 : 과제별 착수보고, 사업비 집행 및 회계정산 교육 등 • 지원금 지급 : 단계별 지원금 지급(협약에 따른 분할지급)
▼	
과제 수행관리	• 과제관리전문가(MP)를 통해 현장점검 등 과제 수행관리 추진 (전문가 선정 및 매칭은 추후 진흥원과 별도 협의)
▼	
중간평가	• 정량적, 정성적 목표 대비 성과 점검
▼	
최종평가	• 과제별 최종평가
▼	
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	• 사업비 정산 및 과제 사후관리(만족도 조사 등) 추진

※ 필요 시 협약 전·후 사업 추진계획의 일치 여부(시설, 제품 등) 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음

▢ 선정방법

○ 과제 적격여부 판정

- 기업 적격여부 판정 시 결격사유(주요 서류 미체출, 중복 수급 등)가 있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※ 결격사유는 선정 완료 후 발견 시에도 적용함

[평가 제외 대상(사전검토)]

1) 기업의 부도
2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3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4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5)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 가)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  나)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6)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7)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8)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*** 관련근거 :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**

○ 평가방법 : 서류(50%) 및 발표(50%) 평가를 통해 수행기업 선정

- 발 표 자 :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(PM)가 진행
- 발표시간 : 과제당 40분(발표 20분, 질의응답 20분) 진행

○ 평가위원 : 수산양식, 데이터, ICT/SW, 회계사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위원회 구성

○ 평가일정 : 2026. 7. 23.(목)(예정) * 개별연락 예정/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평가항목 : [별첨1]평가기준 참고

○ 선정기준

-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·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 선정

※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※ 동점일 경우, 과제 결과의 활용방안 > 추진계획 적절성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

○ 선정결과 발표

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

4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’ 26. 7. 16.(목) 18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,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이후 접수 불가
- **(방문 접수)**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수
- **(이메일 제출)** 메일 제목 예시 : AI어장 시설, 제품 고도화 지원_기업명

○ 제 출 처

- 주 소 : (58600)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200번길 107, 전남유틸리티 자원공유센터
- 담 당 자 :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AX지원팀
  - (이메일) syhii@jcia.or.kr / (전화) 061-280-7404

○ 제출서류

No	내용	해당서식	비고
1	과제 수행계획서 일체(신청서 포함)	서식 1	-
2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2	컨소시엄인 경우 기관별 작성
3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서식 3	참여인력 모두 작성
4	공동수행 확약서	서식 4	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
5	사업자등록증(전남 주소지 必) ※ 지사 기업은 ‘본사·지사’ 증명원 모두 제출	-	원본제출 (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)
6	법인등기부등본	-	
7	국세 완납 증명서	-	
8	지방세 완납 증명서	-	
9	4대보험 완납 증명서	-	
10	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	-	
11	2024 ~ 2025년 표준재무제표	-	

※ 이메일 제출의 경우,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거나 스캔하여 PDF 제출

※ 신청서류 1 ~ 4번 서류는 ‘실제 직인본’으로 제출하며,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※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, 참여기관은 신청서류 2 ~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

※ 서류검토 후 필요 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일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수 있음
- 각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업 부담임
-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내용은 선정완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완료 이후 협약체결 시 원본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5 기타 참고사항

○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용
- 정보통신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에 따름
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관리규칙
- (재)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
-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기타 진흥원에서 지정한 규칙 및 지침 준수 등

※ 관련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선정 및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일반사항

- 본 공고는 비R&D 사업이며, 서비스의 실증 및 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TRL(기술성숙도) 4단계 이내에 집중될 경우 선정 가능성이 낮음

구분	TRL 단계	기술성숙 수준	주요 내용
기초연구단계	TRL 1	기본 원리 이해	기술개발의 가장 낮은 단계, 과학적 연구결과가 응용연구개발 단계로 전이되기 전 단계
	TRL 2	기술개념 및 응용분야 식별	기본원리 이해 후 응용분야를 식별하고, 실험적 증명이나 상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
실험 단계	TRL 3	핵심 기능 개념 입증	주요 기능(분석/실험 등) 또는 특성에 대한 개념을 입증하는 단계 실험실 수준의 연구 포함, 부품 적용 전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수준 포함
	TRL 4	실험실 환경에서 성능 입증	구성품 또는 조립품 수준에서 기본 성능을 실험실 환경에서 입증
시제품 단계	TRL 5	유사 환경에서 성능 입증	구성품/조립품 수준에서 성능 안정성 및 충실성을 실험실 또는 유사 운용환경에서 입증
	TRL 6	시제품 성능 시험	TRL 5 수준 이상의 대표 모델 또는 시제품이 유사 운용 환경에서 시험됨
실용화 단계	TRL 7	운용환경에서 시제품 성능 검증	운용환경에서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, 체계공학과 개발 관리 신뢰성을 확보하는 단계
	TRL 8	실제계 완성 및 시연	기술이 최종 형태로 개발 완료된 상태를 시연 실제 체계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 표현(초도시제품 평가 완료)
사업화 단계	TRL 9	실제 운용 및 입증	최종 형태 및 임무조건 하에서 기술의 실제적인 응용이 완성된 상태 (최초운용능력(IOC) 확인으로 임무 및 운용성 입증)

-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·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·수행기관의 책임임
- 수행기관이 관련 규정 및 진흥원의 규정·지침에 해당하는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, 타 기업육성센터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신청 자격 미달 등 결격사유 보유 시 접수 무효
-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관(주관·참여 모두 해당)을 대상으로 추가서류(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, 보안서약서 등)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,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함

○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

-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를 취급, 관리,

활용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작성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*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
* 지원 대상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
- 본 사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·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·고시 해설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의무*를 준거해야 하며, 법·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·기관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
  *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(www.pipc.go.kr)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

- 개인정보 위탁,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,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·점검·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필요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(담당자)를 지정해야 함
- 사업 수시·중간·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
-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었을 경우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
-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,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
-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, 결과물 내에 개인정보 포함, 개인정보 영향평가, 개인정보 공개,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
-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해지, 참여 제한, 사업비 환수, 사법당국 고발조치,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
- 사업 제안기관·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실증랩(안심존)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, 위반 사실 확인* 시 선정평가 감점

  *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·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

별첨 1 평가기준(안)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서류 평가 (50점)	기업 경영상태	• 표준재무제표 기반 기업 재무 건전성, 경영상태	5
	기반 적정성	• 인력, 제품 보유현황 및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실적	5
	사업추진 타당성	• 산업, 기술, 지역적 측면 등 과제 추진 필요성	10
	사업 경쟁력	• 과제의 차별성,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구체성	10
	추진체계	•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체계, 업무, 역할분담의 적절성	10
	사업관리	• 일정 등 과제관리,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	10
발표 평가 (50점)	추진계획 적절성	•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수준, 정량/정성 목표의 적절성	10
		• 투입 기술, 수집·측정항목, 실증 횟수 및 계획 등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	10
	품질관리	• 지식재산권, 시험인증 등 과제 성과물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	10
	사업화 가능성	•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, 상용서비스 확산 가능성 • 실증 산출 데이터의 활용성, 확장성	10
	기대효과 및 활용방안	• 수요기관 확보 현실성, 실증결과물 활용 시 지역 기여도	10
합 계			100

※ 상기 평가표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별첨 2 사업비 산정 요령 및 수행관리

▢ 사업비 구성

○ 총사업비 : 지원금(국비, 지방비)과 기업부담금(기관부담연구개발비)로 구성

- 기업부담금은 '현금' 또는 '현금 + 현물' 부담
-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% 이하, 기업부담은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이며, 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10 ~ 13% 이상 편성 필수

[(참고)지원금 비율 관련 규정 및 기준]

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

구 분	연구개발비 비율		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
	지원기준	기관부담연구개발비	
중소기업*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5 이상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
중견기업**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30 이상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※ 본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훈령 등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이 적용됨에 따라,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규정 적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,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」을 적용

- 현물부담금(기업부담금) 산출 기준
  - **현물은 인건비에서 책정**. 단, 장비·소프트웨어 현물 필요 시 진흥원과 협의 필수
  - **(인건비)**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
  - **(장비·소프트웨어)**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·소프트웨어를 구입가의 20%(부가가치세 포함) 내에서 현물로 산정

※ 수행주체가 이미 보유한 자산만 편성 가능하며,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적을 경우 불인정

※ 구입한 연구시설·장비가 협약일의 5년 이내여야 하고, 내용연수가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▢ 비목별 편성 기준

○ 모든 사업비의 비·세목 편성 시, '정보통신기금 운용·관리 규정'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

※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

○ 사업비는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재료비, 여비 등 **하단 표 내의 제한된 내용으로만 산정할 수 있음**. 그 외 비·세목 편성 불가

<table>
<tr><th>비목</th><th colspan="2">세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인건비</td><td colspan="2">보수/상용임금</td><td>• 인건비는 직접비(총 사업비)의 50% 이내 산정 가능
※ 대표자 포함, 소속 참여인력(4대보험가입자)만 편성 가능
※ 과제 목표 달성과 무관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며,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운영비</td><td rowspan="2">일반수용비</td><td>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
(전문가 활용비)</td><td>• 1인당 1일 최대 4시간(시간당 10만원으로 산정, 3시간 이상부터 시간당 5만원으로 산정)
※ 전문가 개인정보 및 동의서, 입금내역, 자문의견 등 관련 내용 증빙 필수
※ 전문가 활용비는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산정함</td></tr>
<tr><td>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</td><td>• (정산위탁 수수료)사업비(현금+현물) 정산 위한 회계정산비 의무 편성
※ 사업비 정산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 하며, 선정된 회계법인 표준 수수료 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<table>
<tr><th>사업비 규모</th><th>표준수수료</th><th>사업비 규모</th><th>표준수수료</th></tr>
<tr><td>5천만원 미만</td><td>600천원</td><td>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</td><td>1,600천원</td></tr>
<tr>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<td>800천원</td><td>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</td><td>1,800천원</td></tr>
<tr><td>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<td>1,000천원</td><td>30억원 이상</td><td>2,100천원</td></tr>
<tr><td>3억원 이상 5억원 미만</td><td>1,500천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•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 등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임차료</td><td>• 실증 과제에 필요한 SW 임차비용 및 네트워크 이용료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재료비</td><td>• 수행기관이 보유·생산·판매하지 않는 시약·재료의 구입·임차 비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시설장비유지비</td><td>•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, 본사업의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
※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 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
※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 수리, 보수 내용으로 수개월 이상의 장기 지속 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은 아님</td></tr>
<tr><td>여비</td><td colspan="2">국내여비</td><td>• 사업수행 관련 근무지 내/외 출장
※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</td></tr>
</table>

※ 상기 비·세목별 세부내용은 [붙임 2] 파일 내 [별첨 1 ~ 2] 내용 참조

□ 사업비 사용 및 관리

○ 사업비(지원금 및 기업부담금)는 반드시 과제책임자 및 기업대표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

○ 사업비 통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어 집행·관리하여야 하며,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

○ 사업비 집행내역은 진흥원 및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집행점검 받을 수 있으며,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집행내역을 보완하여야 함

※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불인정금액 분류 시 환수조치

○ 지원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과평가 후 ‘보통’ 판정 이상 기업(주관/참여 모두 해당)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

○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과제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, 과제사업비 사용결과 부당사용,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,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○ 과제종료 후 1주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□ 사업 수행관리

○ 과제 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과제책임자의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함

○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

- 기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: 기업 재무제표 등
  ·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매출 증가율 10% 이상 달성
- 기술이전, 사업화 성과, 특허출원 및 등록,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

□ 결과물 제출

○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,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함

- 최종보고서(과제결과보고서, 실적보고서등) 및 실증 결과물을 과제수행 종료 후 1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※ USB, 외장HDD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함
- 사업비 정산 보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정한 공인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, 과제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